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3. 6. 오세희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 3.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9. 8.)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9. 11.) 상정

제2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9. 22.)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원안
가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9. 25.) 상정 · 소위심사
보고 · 찬반토론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오세희의원)

현행법은 특별시 · 광역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으로 하고, 재단 설립 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세종신용보증재단이 2022. 11. 22. 세종특별자치시에 설립되어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서 특별자치시가 제외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설립 시 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으로써 재단 운영 현황과 현행 지방자치체계에 맞게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9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성소미)

개정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포함하고(안 제5조),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시 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법 제5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업무구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또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자치시”(ex,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 대하여는 업무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 제9조제1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할 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5명 이내의 발기인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또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특별자치시장”(ex,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하여는 이러한 발기인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제1항)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제3항)하고 있음¹⁾.

실제 이러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규정 및 이 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종신용보증재단이 2022년 11월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이 법의 관련 규정에 특별자치시(안 제5조)와 특별자치시장(안 제9조제1항)을 각각 명시함으로써 현행 지방자치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 안 제5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포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합하는 것으로 정비하고, 안 제9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시 받기
인을 위촉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원이 위원)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광역시·도”를 “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광역시장·도지사”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특별시· <u>광역시·도</u>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를 업무 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 을 때에는 둘 이상의 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업무구역) ----- - <u>광역시·특별자치시·도</u> ----- ----- -----. ----- ----- -----.
제9조(설립) ① 재단을 설립하려 면 특별시장· <u>광역시장·도지</u> <u>사</u>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 는 15명 이내의 발기인(發起人) 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설립) ① ----- ----- <u>광역시장·특별</u> <u>자치시장·도지사</u> ----- ----- -----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